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2788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5112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278883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

담당변호사 양석환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변론 종결 2021. 10. 12.

판결 선고 2021. 11. 23.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2016. 4.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2,844,8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소외 파산자 E조합은 2002. 3. 16.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파산자 E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4183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위 채권을 양수받은 F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17가단224855호로 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2. 21. 이 법원으로부터 "45,261,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F 주식회사는 2020. 3. 31. D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같은 해 4. 8.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2020. 7. 10. 기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리금 합계 255,313,916원에 이른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및 매도

- 1) 소외 G는 1986. 8. 22. 대구광역시 동구 H 대 612㎡ 매수한 다음 같은 달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지상에 2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1999. 8. 19.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 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2) G는 2012년 경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처인 I과 자녀들인 피고, 소외 J, K, L, D이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3. I 앞으로 같은 해 1.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12. 3. 31.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4.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3) I은 2015. 5. 15.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6. 4. 4. 경 M을 대리한 N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향과 이 사건 가등기 및 가처분등기, 압류등기 등이 모두 정리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는 2016. 4. 14. I의 상속인인 J, K, L,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지되,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부동산에 집행된 압류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은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다음(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4) 피고는 2016. 4. 27. 소외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66,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7. 28.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는 M으로부터 받은 위 매매대금 중 5,300만 원을 J에게, 61,726,370원을 K에게, 63,000,000원을 L에게 각 지급하였고, D에게는 대출금 변제, 임대차보증금(D의 아들인 O 명의) 등 명목으로 합계 13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의 재산관계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와 D 등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귀속시킨 다음 이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인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해의사 여부

1)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이 D의 유일한 재산인 점 및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의 요청으로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보건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4)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1806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3. 30. 위 법원으로부터 "4,672,137원 및 그 중 2,207,691원에 대하여 200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4. 24. 확정된 사실, P 주식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9374호로 피고를 상대로, I과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2. 1. 15. 체결된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위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법원 2016나30313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사건은 2016. 5. 19. 소취하로 종료되었고 P 주식회사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등기순번 15-2, 21번)도 2016. 4. 29. 각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의 채무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악의의 추정력이 반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사해행위취소에 다른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배상이 가능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경험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외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피고 명의로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해행위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인접한 2021년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895,500원으로 그 시가는 548,046,000원($= 612\text{m}^2 \times 895,500\text{원}$)으로 산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66,178,390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614,224,39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D의 상속지분을 곱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상속지분 가액은 122,844,878원($= 614,224,390\text{원} \times 1/5$)으로 산정되고 위 금액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범위 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선희

별지

1) 원고의 2021.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취소를 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을 2015. 5. 15.로 기재하고 있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분할협의일은 2016. 4. 14.임이 분명하다. 원고의 착오기재로 보인다.